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금지〉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42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금지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2024. 12. 5.
3. 회 부 일: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현실적으로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로 인하여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금지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생략) <신설>	제9조(겸직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4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위원은 재직 중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없다.

- 현행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이 다른 직위를 겸직하게 되면, 위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익 추구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겸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

구 분	금융위원회(9인)	증권선물위원회(5인)
위원장	정무직공무원 1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정무직공무원 1인	-
상임위원	-(당연직)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임명직) 금융위원장 추천 금융전문가 2인(임기제공무원)	-(임명직) 금융위원장 추천 전문가 1인(임기제공무원)
비상임위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경제계대표 1인	금융위원장 추천 전문가 3인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감독 대상 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법 제9조).¹⁾

○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겸직 금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과 동일하게 겸직이 금지됨(법 제30조제6항2)).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중략)

□ 이와 달리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겸직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비상임위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해충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 한 사례는 없으나³⁾,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비상임위원이 특정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었음⁴⁾.

□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임할 때에 사외이사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바⁵⁾, 개정안은 이를

⑥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다만,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 위원 3명이 기업체 사외이사직을 겸임하여 논란이 됨에 따라 해당 사외이사직에서 사퇴한 바 있음(2000. 9. 26.).

4)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 번호 2206237,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음.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선임시 직무 윤리 사전진단 과정에서 직무 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받고 비상임위원 선임 전까지 사외이사를 사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아니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같이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 또한, 유사 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도 상임위원과 동일한 겸직금지 의무를 적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⁶⁾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겸직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주요 위원회 근거 법률상 겸직금지 의무 규정 여부 >

구분		비상임위원 운영 여부	상임위원 겸직금지	비상임위원 겸직금지
정부조직	방송통신위원회	x	o	-
	공정거래위원회	o	x	x
	국민권익위원회	o	o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o	o
	원자력안전위원회	o	o	x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	o	o	o
	금융통화위원회	x	o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o	-	x

주: 해당 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등 타법에 따라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개정안은 비상임위원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비상임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해충돌의 문제는

6)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규칙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겸직금지되는 직과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기업체 규모와 관계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체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현재 사실상 모든 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비상임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기업체의 사외이사의 겸직은 오히려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또한, 동 법에 따라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제도⁷⁾가 적용되고, 비상임위원에게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⁸⁾이 적용되는 등 현행법에 비상임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회의 등) ①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議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이하 생략)

8) 비상임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의 의무가 적용됨.

□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과 겸직금지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각 법률에 따라 비상임위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원 등과 같은 명시적 겸직 금지 직무 외에는 대통령령에서 업무의 특성 및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지 직무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과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비상임위원 겸직 금지 규정 입법례 >

위원회명	법령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위원회명	법령 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시행령 없음)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u>관련된 업무</u>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u>관련된 업무</u>
국가인권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 그 밖에 <u>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u>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상임위원/비상임위원 각각에 대해 겸직 금지되는 직과 업무 명시

주: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동일한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함.

문 의 처

02)6788-5104